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2. 05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개정(2007. 11. 13.)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변경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수의 여비 지급 구분 변경(안 제4조제1항)

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 제2호 ⇒ 별표 1제1호라목 적용
 나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 앞에 “영”을 첨가함(안 제5조)

다. 인용하는 상위 규정의 조 및 별표를 변경(안 제5조제1호, 제6조)

(1)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

⇒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(제28조 삭제)

(2)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,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⇒ 영 별표 1

라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상의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적용하는 조항 신설(안 제5조제7호)

○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본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, 제8조의2 및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 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별표1 제2호를”을 “별표 1 제1호라목을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”을 “(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,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”를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 이 조에서는 “영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”로 하며, 같은 조제1호 중 “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”를 “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호 중 “제17조제1항 단서”를 “영 제17조제1항 단서”로 하며, 같은 조제3호 중 “제24조제5항”을 “영 제2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“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”를 “영 제18조 및 제27조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제5호 중 “제29조제1항”을 “영 제2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영 별표 1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 한다.
7.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정안
<p>6. <u>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</u> 중 “<u>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</u>”으로,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“<u>「공무원보수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</u>”으로,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“<u>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</u>”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u>부칙(2006.04.10. 조례 제1789호)</u> <u>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6. 1.1부터 적용한다</u></p>	<p>6. 영 <u>별표 1</u> 중 “<u>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</u>”으로, “<u>「공무원보수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</u>”으로, “<u>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</u>”은 “<u>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</u>”으로 한다.</p> <p>7. 영 <u>제8조의2 및 제16조</u> 중 “<u>정부구매카드</u>”는 <u>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</u>로 본다.</p> <p>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</u></p>